

전주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0가단3309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
담당변호사 우승원, 진현덕
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
변 론 종 결 2021. 10. 26.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주 문

1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9. 15. 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9. 22. 접수 제167401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구상금채권

- (1) 원고는 2015. 5. 28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(이하 ‘소외회사’라고 한다)과 소외회사의 (주)C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70,000,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.
- (2) 원고는 2020. 6. 15.경 (주)C로부터 소외회사가 2020. 5. 22. 원금을 연체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20. 9. 4. (주)C에 273,453,7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- (3) 원고는 2020. 9. 15. 소외회사 등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(전주지방법원 2020차전11202)을 받아 2020. 10. 6. 소외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나.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

- (1) 소외회사는 2018. 4. 13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(이하 ‘D’이라고 한다)를 상대로 1,358,555,325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.
 - (2) D은 2018. 2. 12. 소외회사에게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,000,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 - (3) 소외회사는 2017. 6. 29. 피고로부터 5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, 2020. 8. 31.경 피고에게 차용금채무 중 3억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3억원을 양도하고, 2020. 9. 22.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20. 9. 15.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’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권리의 존재

- (1)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, 피고는 소외회사가 2020. 8. 31.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 이후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20. 10. 6.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.
- (2) 살피건대,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(주)C에 대위변제한 2020. 9. 4.이고,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일자(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로 기재된 2020. 9. 15.)로 보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.
- (3)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이 2020. 8. 31.이라고 하더라도,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(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),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는데다 소외회사가 원금을 연체한 2020. 5. 22. 이후인 2020. 8. 31.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, ② 실제 소외회사가 2020. 5. 22.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, 이에 원고가 2020. 9. 4. (주)C에게 소외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회사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므로,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소외회사의 무자력

(1) 갑 제3, 5, 6호증,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덕진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소외회사 소유이던 화성시 F 전 873㎡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인 2020. 8. 3.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,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외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, 반면 소외회사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73,453,786원과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5억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(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의 재산으로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나, 위 채권이 2017년경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실제 회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향후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피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.

다. 사해행위의 성립

소외회사가 원고와 피고에 대한 각 채무가 있음에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소외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.

라. 소결

따라서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유재광

별 지(부동산목록)

1동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동작구

[도로명주소]서울특별시 동작구

전유부분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 : 2층 호 55.63㎡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표시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280.8㎡

대지권종류 : 소유권

대지권비율 : 280.8분의 35.437

- 이 상 -

